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6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8가단123697 근저당권말소

원 고 [redacted]시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18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07. 5. 21. 접수 제58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. 5. 21.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6

판사 왕지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6

별 지 목 록

[redacted]도 [redacted]주시 [redacted] 임야23802㎡

- 이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관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6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 [redacted]주시는 소외 B (, 2012.8.20. 사망) 및 소외 C (, B 의 배우자)에 대해 각각 지방세 체납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,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'이하 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합니다)에 대해 채무자를 B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.

2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

가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외 B 이 1994.5.30.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인 남양주시가 소외 B 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체납자인 소외 C 등을 대위하여 2017.12.7.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C 외 1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소외 D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17.12.19.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.

나.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7.5.21. 채무자를 B 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50,000,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58060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3. 지방세 체납과 대위등기 및 압류처분 등

가. 원고는 소외 B 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0.4.1.과 2011.11.21. 이 사건 부동산에 각각 압류등기를 완료하였으며, 제소일 현재 B 의 체납액은 4,985,120원입니다.(갑 제1호증 B 체납리스트)

나. 한편 원고는 소외 C 에게 남양주시 E 등 소재 부동산에 대해 소외 B 의 사망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한센인 감면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유보기간인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경기도 세정과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2013.10.10. 가산세를 포함 추징부과하고 납부독촉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총 735,937,220원의 체납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(갑 제2호증 C 체납리스트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06

다. 또한 원고는 소외 C 보유로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고액의 근저당채무 및 선순위 압류권자 [redacted]세무서의 압류등기로 인해 체납처분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사망한 소외 B 의 미상속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 C 을 대위하여 2017.12.7. 상속등기하고 압류를 경료하였습니다.(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)

4.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

위 사실들을 기초로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공매처분의 실익을 판단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. 그러나 소외 B 과 피고 사이의 2007.5.21. 접수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부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합니다.(민법 제162조 제①항)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음이 명백합니다.

5. 채권자대위권

한편 원고는 소외 C 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의거 소외 C 과 현 소유자인 D 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할 것입니다.

6. 결어

따라서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C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